

分離計定과 金利自由化

李 鳳 周 (保險開發院 · 研究委員 · 保險學博士)

崔 相 泰 (保險開發院 · 研究員)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分離計定의 特性과 會計處理

1. 分離計定의 特性

1) 分離計定의 國別 用途

2) 分離計定資産의 運用

2. 分離計定의 會計處理

1) 分離計定과 一般計定의 會計

2) 分離計定과 一般計定의 財務諸表

樣式

III. 美國의 分離計定

1. 分離計定의 運用對象과 規制

2. 分離計定의 規模

IV. 日本의 分離計定

1. 分離計定의 運用對象과 規制

2. 分離計定의 規模

V. 結 論

구조를 말한다. 이때 分離計定은 保險種目別(또는 商品別)로 수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보험종목별(또는 상품별)로 부채와 자산의 조화(matching)를 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분리계정이 도입된 주된 動機 중의 하나는 他 金融產業과의 競爭力提高를 위해서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40년대와 1950년대에 金利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연금기금(pension funds)은 保險社에 비해 투자 제약을 덜 받아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던 銀行이나 投資諮問社에 연금기금의 위탁 및 운용을 위임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保險監督當局은 보험업계에 자산운용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리계정의 도입을 전반적으로 1960년대 초에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분리계정은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여타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책임준비금은 통상 분리계정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다.

앞으로의 국내 경영환경은 보험업계에 분리계정의 필요성을 점증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금융자율화 추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利自由化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리

I. 問題의 提起

分離計定(separate account)이란 보험회계상 특정보험종목을 다른보험종목과 구분해서 운용하는

자유화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제 1 단계로 '91년 11월부터 3년이상 장기예금금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액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등의 受信金利와 은행당좌대월과 기업어음할인, 短資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등의 與信金利, 그리고 만기 2년 이상의 회사채금리가 자유화된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자금의 超過需要는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금리인상을 적어도 단기적으로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로는 '88년말에 시행된 금리자유화조치가 금리상승의 유발에 의해 결국 중단되었다는 경험과 현재의 총체적인 경제상황은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열악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금리자유화 추진에 따른 경쟁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의 인상은 보험업계의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는 장기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에게도 적용되었지만 단기 저축형상품의 점유 비중이 높은 생보사에게 특히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한다. 금융기관간 금리경쟁에 다른 소비자들의 金利敏感度의 증가는 경쟁력있는 금리감응형 고수익상품의 도입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킬것으로 사료되고 이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企業年金(private pension)의 자산운용측면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속에 實勢金利를 適時에 반영하는 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分離計定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분리계정의 회계처리, 분리계정자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등이 본고의 주요관심대상이 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투자효율 증대의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분리계정에 초점을 맞추므로 미국과 일본의 분리계정의 운용현황이 자세히 조사되었

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분리계정의 일반 특성과 회계처리가 논의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분리계정의 운용대상, 규제 및 규모가 각기 상술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부분으로 국내에 분리계정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의 중요 고려사항이 간략히 언급된다.

II. 分離計定の 特性과 會計處理

1. 分離計定の 特性

1) 分離計定の 國別 用途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상 엄격한 법적 제한하에 있던 보험회사에 비해 자유로운 투자규제하에서 높은 운용성과를 시현함으로써 고성장한 비보험형 기업연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연금제도의 분리계정문제가 제기되었다. 1957년에 Connecticut주와 New Jersey가 분리계정을 법제화하고 1960년대에 들어 New York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가 분리계정의 운영을 인정하게 되었다. 현재 기업연금상품(HR 10, Corporate tax qualified, 403(b)-tax deferred annuity), 변액보험(flexible premium variable life, single premium variable life) 및 변액연금(flexible payment variable annuity)에 대해 분리계정이 중점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생보사가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Life and Annuity) 뿐만 아니라 상해 및 질병(Accident and Sickness)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두 분야를 구분한 분리계정의 설치가 보험법상 요구되고 있다. 변액보험과 같은 분리계정상품(seg-

regulated fund policies)이 판매될 경우 당연히 추가적인 분리계정이 설치된다. 나아가 무배당부상품이 판매될 경우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종목은 또 다시 세분하여 배당부상품, 무배당부상품 및 株主계정(shareholders' interests)으로 분류하여 분리계정의 운용이 요구된다.¹⁾

일본의 경우 분리계정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운용되고 있다.²⁾ 손해보험의 경우 1986년 부터 새로운 적립형상품(부보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과 저축성이 혼합된 상품)에 대해 분리계정이 도입되었다. 생명보험회사에 분리계정의 도입이 인정된 것은 1986년 개인 변액보험이 발매될 때 부터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인 厚生年金 및 國民年金의 적립금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수익運用을 도모함으로써 年金財政 충실화를 목적으로 한 「變額年金 福祉事業團保險」(1988 발매)에서 분리계정이 이용되고 있다. 당시 대상이 되는 보험은 법인 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 2항에서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연금은 연금원액이 정액이므로 분리계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후 1989년 3월말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후생연금기금과 적격연금에 관해서 분리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보회사는 1990년 4월부터 분리계정으로 운용하는 신기업연금을 발매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1973년 개정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Act of 1973)의 제7조제4항에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각 보험종

목별로 별개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보험종목에서의 수입을 각각 별개의 계정에 계상하여 이러한 보험종목별 자산과 부채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장부를 작성, 관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82년에 개정된 보험법의 부칙에 의하면 생명보험사업은 일곱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생명보험 및 연금, 결혼 및 출산(marriage and birth), 연동부 보험(linked long term), 무기한 건강(permanent health), 톤틴 연금(tontines), 자본보상(capital redemption) 및 연금기금관리(pension fund management)이다.

이상에서 보듯 여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생보회사의 분리계정제도는 각국의 보험법에 의거해 보험으로서의 구조를 견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분리계정설치의 필요성을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가. 리스크부담이 상이한 變額保險資產과 定額保險資產의 區分

변액보험은 유가증권의 자본손익까지 포함한 자산운용의 종합이익 또는 손실을 계약자에게 직접 환원하므로, 일정액의 보험금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높은 위험부담이 없는 정액보험과는 리스크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 資產運用收益의 구분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수익을 계약자에게 즉시 환원하는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산운용수익을

1) Life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pp.179-180.

2) 일본에서 분리계정은 特別計定으로 불리운다.

3) 明治生命, 日本生命, pp.78-79

정책보험자산에 의한 운용수익과 혼동되지 않게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별도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 資産評價方法의 區分

변액보험의 자산은 이른바 계약자 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 각 계약적립금의 산출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지분액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고, 자산평가 방법도 이러한 요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상장주식은 시가평가). 이것은 기업자산 건전성의 관점에서 저가법을 채용하는 일반계정과는 기본적으로 상이하므로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商品特性에 맞는 資産運用

변액보험의 자산운용방침은 기본적으로 각사가 판단하여야만 하는 문제이다. 고객의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고수익의 기대와 보증제공 상품으로서의 안정성의 요청이라는 양측면을 고려한 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자에게 계속적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환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과 비교할 때, 수익추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分離計定資産의 運用

보험회사의 회계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분리계정으로 나뉘어지고, 나아가 분리계정은 합동운용 분리계정(pooled separate accounts)과 단독운용 분리계정(non-pooled separate account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단일 분리계정에 복수의 보험계약 자산을 합동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운용 대상 별로 복수의 운용구좌(주식, 공사채, 대출등)를 설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운용구좌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후자는 보험계약 별로 분리 계정을 설정해서 개별 운용하는

것으로 주로 대기업의 연금제도(pension plan)의 연금자산 운용에 적합하다.

분리계정자산은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운용을 투자고문 자회사 및 외부 투자매니저(예컨대 mutual fund)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분리계정자산에서의 모든 투자수익과 자본이익 및 손실(실현 및 미실현 포함)은 보험사 여타수익과 분리하여 분리계정에 귀속 처리되고, 투자 성과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분리계정자산과 그 운용성과액은 통상적으로 보험사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에 얽매이지 않거나 또는 완화된 투자규제하에 투자 및 재투자될 수 있다. 분리계정의 재무실적은 분리계정 연간 재무제표에 공시된다. 반면 분리계정에 자산이 운용되고 있을지라도 보장급부의 준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 측면에서 급부가 보장된 경우, 그리고 원금이나 예시금리 측면에서 금액이 보장된 경우에 보험사의 준비금이 분리계정에 유치된만큼, 이러한 급부보장을 위해 적립된 준비금과 적어도 동일한 금액의 분리계정자산은 본사가 소재한 洲의 투자규제에 부합하여 투자된다. 즉 이러한 자산은 별도로 공시되며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평가된다.

급부가 보장된 경우 이외의 분리계정자산은評價日の 시장가액(market value)에 의해 평가된다. 만약 자산의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 준거계약에 의해 평가된다. 분리계정자산의 평가빈도는 日別, 月別, 週別 및 分期別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주식, 회사채, 국채 등은 매 영업일마다, 금리보장상품(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은 매주

마다, 사모사채, 국제지수(international index) 등은 매월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매 분기마다 평가된다. 분리계정을 수반하는 계약의 준비금은 통상 분리계정자산의 시가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분리계정에 의한 연금자산운용을 일반계정에 의한 운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분리계정과 일반계정의 운용비교

구 분	분리계정	일반계정
수익환원	직접적, 매년변동	간접적, 안정적
정보공시	시가를 포함한 공시	시가와 무관계
운용형태	특정보험계약 자산을 대상	모든 보험자산을 합동으로

2. 分離計定の 會計處理⁴⁾

1) 分離計定과 一般計定の 會計

가. 會計公示內容

분리계정 재무제표는 분리계정의 투자활동과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흐름을 주대상으로 하고 분리계정자산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용 및 세금이 공시된다.

일반계정 재무제표에서는 보험영업과 관련된 제반거래(판매, 언더라이팅 및 계약보전, 보험료수입, 보험료세, 클레임 및 급부의 지급)를 명시하고 아울러 보험영업에 수반하는 비용도 명시된다. 따라서 변액상품에 대한 보험료 및 급부지급은 일반계정 재무제표에 공시된다. 한편 분리계정 자산의 투자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및 보험료세와 같은 투자와 연관되지 않은 세금은 일반계정에 공시된

다.

나. 分離計定の 始發

새로운 분리계정이 시작되었을때 보험사는 창업기금(seed money)이라 불리는 잉여금을 분리계정에 일시적으로 대체한다. 이는 분리계정 보고서에 잉여금으로서 계상되고 이러한 자금의 入出은 잉여금의 증감으로 공시된다.

다. 變額商品의 會計處理

변액상품계약이 최저보장급부(예컨대 특정기간 이내 사망時 既支給保險料를 환급하는 경우)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준비금은 통상 일반계정에 공시된다. 아울러 변액상품이 사망을 보장할 경우 이러한 변액상품의 준비금은 일반계정에 공시된다. 일반적으로 총분리계정자산가액은 분리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총분리계정준비금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보험료(Gross purchase payments)는 일반계정에 공시된다. 변액상품의 경우 순보험료는 즉시 분리계정에 이전된다. 이때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순보험료만이 이전되어야하고 만약 순보험료가 수입보험료로써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는 분리계정에 설정된 특정계정과목에 이전되어야한다. 예컨대 변액연금의 순보험료가 수입보험료로써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는 분리계정상에 '연금예탁금'(annuity deposit) 또는 '선지급 준비금'(purchase payment reserve) 등의 계정과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분리계정에 축적된 자금(순보험료+투자수익)이 연금상품이나 추가적인 보험상품(supplementary contracts)의 구입에 이용될 경우, 이는 일반계정에 대체되고 수입보험료로 처

4) 본절에서 논의되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한 미국의 경우를 소개한 것이다.

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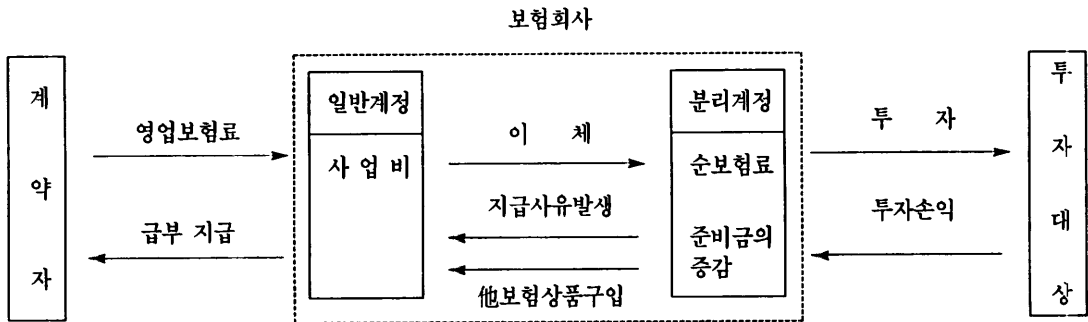
라. 企業年金商品의 會計處理

분리계정이 기업연금제도와 연결하여 운영될 때 이는 축적단계(accumulation stage)에서는 연금기금의 재정을 위해 그리고 지급단계(payout stage)에서는 단체변액연금의 재정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즉 사용인으로 부터의 보험료(각출금)는 일반계정에 일단 수취된 후 여기서 사업비 부분을 공

제한 후 분리계정으로 이전된다. 확정 또는 변액 연금의 구입을 위해 인출된 자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고 이는 수입보험료로 공시된다. 퇴직종업원을 위해 연금상품이 매입될 경우, 매입 이전에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흐름을 요약하면 <도표 2>와 같다.

경우에 따라서 종업원 급부 자금(employee ben-

〈도표 2〉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체



efit funds)은 분리계정에 유치되어 운용되고 필요 시 특정목적에 위해 인출된다. 그러한 자금은 성격상 장부상의 부채이므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분리계정에 이관된 모든 보험료, 예탁금등은 현금 항목이다. 분리계정운영상의 특유의 성격상 보험료에 관한 선급 또는 미지급 항목이 분리계정 재무제표에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급부와 추가계약에 대한 지급은 분리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전된 자금을 의해 이루어진다. 분리계정에서 이전되었으나 연말에 지급되지 않는 부채는 일반계정에 공시된다.

변액연금상품은 축적단계에 계약자가 자금을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상호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 계정 또는 양 계정에서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의 이전에 대한 특별조항이 요구된다.

통상 개인변액연금계약은 예정사망을 및 예정사 업비를 보장한다. 이러한 보장에 대한 비용, 관리 및 투자관리비용은 계약의 자산가액의 年率로 표시되거나 매 계약당 일정금액으로 표시된다. 이와 같은 보장비용은 분리계정자산의 평가시점에 맞추어 분리계정에서 공제된다. 분리계정으로 운영되

는 단체계약도 유사하다.

마. 諸費用的 會計處理

분리계정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통상 일반계정으로 대체된다. 공제는 되었으나 대체되지 않은 비용은 분리계정 재무제표의 부채로 計上된다. 사망을 및 사업비 보장에 대한 비용(charges)은 분리계정에서 잉여금(surplus)으로 축적될 수도 있다.

투자비용 발생시 이는 분리계정으로부터 직접 지급되거나, 또는 일반계정에서 지급하고 분리계정에서 사후 충당할 수 있다. 분리계정에 관련된 투자비용이 일반계정에서 처리할 경우 이러한 투자비용은 일반계정보고서에서 종목별로 공제되고 분리계정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기입된다.

바. 稅金の 會計處理

투자관련세금은 통상 분리계정에서 직접 지급되거나 지급을 위해 일반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연방소득세는 분리계정에서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세 금액은 일반계정으로 대체된다.

장래 지급될 연방소득세 준비금은 분리계정 보고서에서 계상된다. 이 계정과목의 목적은 모든 자산이 특정시점에 모두 환매된다는 가정하에 지급해야 할 자본이익세(capital gains taxes)를 공제한 純益이 계약자에게 귀속될 자본이익이라는 것을 인지하는데 있다. 자본이익세액의 공제는 부채계정인 “장래 연방소득세 준비금” 계정과목의 증가로 반영된다. 따라서 미실현 자본이익의 감소는 이 계정의 감소를 가져온다.

사. 死差損益의 會計處理

분리계정은 통상 보험영업수익을 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차손익 및 비차손익은 일

반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투자비용과 투자관련세금은 투자손익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용 및 세금공제후 투자 손익은 부채계정인 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분리계정재무제표상에 보험영업이익이 시현되는 경우 이는 분리계정에 유지된 잉여금에 대한 수익에서 야기되거나 또는 보험사가 분리계정에서 사망 및 사업비 보장분에 대한 비용을 일반계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사차손익은 하기 두 방법 중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① 분리계정 재무제표에서 사차손익이 보험영업수익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사차익은 일반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반면 사차손의 발생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대체되어야 한다. 예컨대 변액연금에 있어 실제 사망율이 예정사망율보다 낮은 경우 투자기금은 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필요금액보다 적게되므로 필요자금이 일반계정에서 분리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반대로 실제사망율이 예정사망율보다 높아 사차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는 분리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이던 분리계정 손익계산서에 ‘일반계정이체’(other transfers from the separate account)라는 과목이 쓰일 수 있다. 이때 사차손의 상쇄분은 음수로 계상된다.

② 사차손익이 영업수익으로 처리되고 잉여금계정이 ‘0’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리가 잉여금 계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분리계정의 잉여금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잉여금계정이 음수가 될 경우 일반계정에서 분리계정으로 상응하는 금액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투자수익과 자본손익’ 계정(in-

vestment income and capital gains and losses)에 계상되는 금액은 모든 분리계정자산에서 발생한다. 이 금액은 ‘연금 및 기타 예탁금’(annuity and other fund deposits)에 대한 수익을 포함한다.

아. 분리계정과 일반계정의 연결

대체거래는 일반계정 재무제표와 분리계정 재무제표에 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세부적인공시의 중복을 피하고 아울러 일반계정 재무제표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체거래의 세부사항은 단지 분리계정 재무제표에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대체거래의 총액은 일반계정 재무제표에 하나의 계정과목으로만 나타난다.

분리계정자산의 총액은 일반계정 재무제표 자산항목 중의 하나로 표시된다. 일반계정 부채항목중 분리계정과 관련된 것은 두 계정이다. 하나는 분리계정으로 지급하거나 분리계정에서 受入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純금액기준에 의해 공시되므로, 만약 분리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 두 금액의 純額은 음수로 기입된다. 또 다른 하나는 분리계정의 총 부채액을 뜻한다.

2) 分離計定과 一般計定の 財務諸表 樣式

가. 分離計定과 一般計定 貸借對照表의 關係

미국에서 분리계정을 운용하는 생보사는 두 종류의 재무제표를 매년 州 보험당국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하나는 분리계정을 포함한 회사 전반에 대한 일반계정 재무제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리계정 재무제표(Annual Statement of the Separate Account Business)이다.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계정자산의 총액은 일반계정 재무제표 자산항목중의 하나로

표시되고, 두 계정과목 즉 분리계정으로 지급하거나 분리계정에서 受入되어야 할 금액(‘분리계정이체’; transfers to separate accounts due or accrued (net))과 분리계정의 총부채액은 일반계정 부채항목에 나타난다.

〈도표 3〉

일반계정대차대조표

일반계정 자 산 분리계정 자 산	일반계정부채 분리계정이체 분리계정부채 자 본 금
총 자 산	부채 및 자본금

실제로 보험당국에 보고되는 분리계정 대차대조표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표 4〉와 같다.

분리계정 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15번), ‘일반계정이체’(12번) 및 ‘부채총계’(17번) 항목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의 ‘분리계정자산’, ‘분리계정이체’ 및 ‘분리계정부채’ 항목과 상응한다. ‘일반계정이체’는 ‘분리계정이체’의 상대과목이다. 따라서 ‘분리계정이체’ 항목의 잔고가 양수일 때 즉 일반계정에서 분리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일반계정이체’의 잔고는 음수로 나타난다.

〈도표 4〉
분리계정 대차대조표

자 산		부채 및 잉여금	
1. 장기채권(Schedule D)	XXX	1. 생명보험계약준비금(Exhibit 6)	XXX
2. 주식(Schedule D)	XXX	2. 상해 및 건강보험 계약준비금(Exhibit 7)	XXX
3. 저당대출(Schedule B)	XXX	3. 확정추가보험계약준비금	XXX
4. 부동산(Schedule A)	XXX	4. 계약자 배당준비금	XXX
5. 보험약관대출	XXX	5. 보험료 및 기타 예탁금 준비금	XXX
6. 현예금(Schedule F)	XXX	6. 미지급 투자관리 수수료	XXX
7. 단기투자(Schedule DA)	XXX	7. 미지급투자비용(Exhibit 4)	XXX
8. 기타투자자산(Schedule BA)	XXX	8. 미지급 투자관련 세금(Exhibit 5)	XXX
9. 투자자산 기타항목	XXX	9. 미지급 연방소득세	XXX
10. 현금 및 투자자산총계 (1번에서 9번항목까지)	XXX	10. 장래연방소득세준비금	XXX
11. 미수투자수익	XXX	11. 미경과투자수익(Exhibit 2)	XXX
12. 미수투자처분액	XXX	12. 일반계정 이체	XXX
13. 자산 및 부채의 환율조정차	XXX	13. 가수금	XXX
14. 투자자산의 기타자산	XXX	14. 미지급투자액	XXX
15. 자산총계	XXX	15. 자산부채의 환율조정차	XXX
		16. 부채의 기타항목	XXX
		17. 부채총계	XXX
		18. 기여잉여금	XXX
		19. 특별잉여금 기타 항목	XXX
		20. 미할당 잉여금	XXX
		21. 잉여금 총계	XXX

나. 분리계정 수지보고서와 잉여금 보고서
일년간 분리계정영업의 손익을 나타내는 수지보
체된 금액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리계정 수지보고서

1. 분리계정으로 이체

1.1 순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XXX
1.2 보험료 및 기타 예탁금	XXX
1.3 추가생명보험 보험료	XXX
1.4 확정추가보험 보험료 및 변액배당누적액	XXX
1.5 분리계정이체에 대한 기타항목 ⁵⁾	XXX
1.6 소계	XXX
2. 순투자수익 및 자본손익(Exhibit 1)	XXX

5) 항목 1.5에 대한 예로는 양수(+)로 보고되는 사차익을 들 수 있다.

3. 기타 수익	XXX	17. 순영업수익(항목 4에서 항목 16 공제)	XXX
4. 합계(항목 1.6에서 3까지)	XXX		
5. 급부발생으로 인한 일반계정으로 이체		분리계정의 운영에서 발생한 순영업수익(수지보고서의 항목 17)은 분리계정 잉여금의 산정을 위해 잉여금 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1 사망보험금	XXX	<u>분리계정잉여금 보고서</u>	
5.2 만기환급금	XXX		
5.3 연금지급금	XXX		
5.4 추가생명보험계약 보험금	XXX		
5.5 확정추가보험계약 및 변액배당 누적액에 대한 지급	XXX	전기말 잉여금	XXX
5.6 상해 및 건강보험금	XXX	순영업수익	XXX
5.7 급부로 인한 일반 계정이체 기타항목 ⁶⁾	XXX	당기 기여(또는 인출) 잉여금	XXX
6. 보험약관대출로 인한 일반계정이체	XXX	평가기준변경에 따른 준비금 증감	XXX
7. 준비금의 일반계정이체	XXX	잉여금 손익의 기타항목	XXX
8. 여타 일반계정으로의 이체	XXX	당기말 잉여금	XXX
8.1 투자관리 수수료	XXX	(상기계정의 합)	
8.2 발생연방소득세	XXX	여기서 당기말 잉여금은 분리계정 대차대조표에서 미할당잉여금(unassigned surplus) 즉 항목 20번에 보고된다.	
8.3 여타 일반계정이체의 기타항목	XXX		
9. 소계(항목 5.1에서 8.3까지)	XXX		
10. 상해, 질병 및 건강보험 준비금의 증가액	XXX	다. 분리계정 재무제표의 구성	
11. 확정추가보험계약 및 변액배당 축적액에 대한 준비금의 증가액	XXX	전술한 바와 같이 분리계정 재무제표에는 다수의 명세서(Exhibit)와 명세표(Schedule)가 포함되어 있다. 분리계정 재무제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2. 보험료 및 기타 예탁금에 대한 부채증가	XXX	○ 대차대조표	
13. 보험료 및 기타 예탁금에 대한 투자수익 및 자본손익	XXX	○ 수지보고서	
14. 미지급연방소득세 준비금 증가	XXX	○ 잉여금 보고서	
15. 준비금과 기금에 대한 기타항목 ⁷⁾	XXX	○ 보험종목별 수지보고서	
16. 합계(항목 9에서 15까지)	XXX	○ 준비금 변동 보고서	

6) 항목 5.7에는 장애(disability)급부, 보험수수료(Insurance Charge) 또는 해약환급금등이 포함된다.

7) 본 항목에는 창업기금(seed money)의 투자손익이나 일반계정으로의 잉여금지급 등이 포함된다.

- Exhibit 1-투자순수익 및 자본 손익 명세서
 - Exhibit 2-총투자순익 명세서
 - Exhibit 3-투자에 대한 자본손익명세서
 - Exhibit 4-투자비용 명세서
 - Exhibit 5-투자관련 세금 및 인허가 비용 명세서(연방 소득세 제외)
 - Exhibit 6-생명보험 및 연금계약준비금 명세서
 - Exhibit 6A-평가기준변동명세서
 - Exhibit 7-상해 및 건강보험준비금 명세서
 - Exhibit 8-확정보험계약준비금 명세서
 - Exhibit 9-현금과 투자자산의 조정명세서
 - Exhibit 10-보장보험 및 연금상품준비금 명세서
 - 예탁금 명세표(Schedule of All Other Deposits)
 - Schedule A-Part 1 : 부동산 매입 및 보유명세표
 - Schedule A-Part 2 : 부동산 매각 명세표
 - Schedule B-Part 1 : 장기저당대출 명세표
 - Schedule B-Part 2 : 장기저당보유 및 처분명세표
 - Schedule BA-Part 1 : 기타 장기투자자산보유 명세표
 - Schedule BA-Part 2 : 기타 장기투자자산구입 명세표
 - Schedule BA-Part 3 : 기타 장기투자자산처분 명세표
 - Schedule D-국별 장기채권 및 주식 명세표
 - Schedule D-Part 1 : 장기채권 명세표
 - Schedule D-Part 2 : 우선주 및 보통주 명세표
 - Schedule D-Part 3 : 장기채권 및 주식매입명세표
 - Schedule D-Part 4 : 장기채권 및 주식처분명세표
 - Schedule D-Part 5 : 당기에 매입,처분된 장기채권 및 주식명세표
 - Schedule DA-Part 1 : 단기투자자산 명세표
 - Schedule DA-Part 2 : 단기투자자산의 년도간 확인 명세표
 - Schedule DB-Part A : 만료 옵션 명세표
 - Schedule DB-Part B : 보유 옵션명세표
 - Schedule DB-Part C : 선물 명세표
 - Schedule E : 예금 명세표
- 라. 일본의 분리제정과 재무제표
- 일본에서는 분리제정 재무제표가 미국과 같이 별도로 자세히 요구되지 않고 분리제정과 관련된 것은 일반제정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포함해서 표시된다. 대신 분리제정의 자산, 부채의 금액은 대차대조표에 주기하도록되어 있고 부속명세서에 분리제정의 자산 및 부채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도표 5>에 공시된다.
- 그러나 앞으로 분리제정을 도입하는 보험종목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재정상의 중요성이 증대할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제정의 독자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제표 체계속에 분리제정과목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표 5〉
분리계정의 자산 및 부채

(1) 분리계정자산

(단위 : 백만엔)

구 분	전기말잔고	당기말잔고	당기증감(△)액
현금 및 예금 예금 저축성예금 콜론 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사채 주식 외국증권 기타증권 대출금 기타 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예탁금 가지급금 일반계정대 자산합계			

(2) 분리계정부채

(단위 : 백만엔)

구 분	전기말잔고	당기말잔고	당기증감(△)액
보험계약준비금 기타 부채 당좌차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가수금 대손충당금 일반계정차 부채합계			

(기재상의 주의) 분리계정을 보수로 설정할 경우는 그 합계액을 기재할 것.

III. 美國의 分離計定

1. 分離計定の 運用對象과 規制

1) 分離計定の 設定對象

뉴욕 보험주법은 보험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리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액 및 변액 연금

둘째, 변액보험

셋째, 생명보험(정액 및 변액보험) 매입을 위한 자금

네째, 사망보험금, 만기양로보험금, 배당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자나 수익자의 요청시)

다섯째, 기업연금제도(이는 이익배분제도(profit-sharing plan)등을 포함)의 수탁자금

이외에도 보험사는 일정한도 내에서 추가 금액을 분리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러한 추가금액의 한도는 전년말 용인자산(admitted assets)의 1%와 용인자산에서 부채와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이다. 한편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 보장된 급부금에 대한 준비금과 원금이나 금리가 보장된 자금에 대한 준비금의 분리계정 설정은 금지되어 있다.

2) 分離計定 會計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자산의 판매, 교환, 또는 이체를 분리계정간에 또는 일반계정과 분리계정간에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 이체가 분리계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는 분리계정에 관련 상품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분리계정

으로의 자산 이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분리계정자산은 시장가액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평가시점에서 상각가액(amortized cost)이 미국 증권감독원(SEC)이 설정한 범위내의 시장가액과 近似한 경우 상각가액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바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금액과 기간이 보장된 급부금에 대한 준비금과 원금이나 금리가 보장된 자금에 대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분리계정자산은 보험사 일반자산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일반계정자산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를 받는다.

투자액이나 비용의 배분이 분리계정간에 또는 분리계정과 일반계정간에 불공정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보험사는 최소한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해 축적된 금액 및 지급 중인 변액연금의 준비금에 필적하는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3) 分離計定 資産運用規制

분리계정에 할당된 금액과 그 이후 적립된 금액의 투자 및 재투자는 일반계정자산운영 규제에 관계없이 보험사와 계약자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뉴욕주에서는 보험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이 분리계정자산에 편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예상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순투자수익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분리계정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사는 분리계정자산 투자시 유사한 상황에서 신중한 투자자(prudent person)가 행사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리계정에 할당된 금액은 보험사의 소유이고 분리계정자산은 보험사의 재산이지만 분리계정을 운영한다 하여 보험사가 피신탁인(trustee)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분리계정자산은 보험사의 여타 보험영업에 기인한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용될 수 없다.

4) 分離計定の 認許可

보험사는 분리계정을 운영하기 위해 분리계정 사업방법서(plan of operations)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계획서는 투자정책, 분리계정 참여 계약자의 수효 등에 의해 분류되는 분리계정에 적용된다. 허가여부 결정을 위해 참고되는 사항은 보험사의 역사, 평판, 재무구조 및 임원의 자질과 경험등이다.

5) 分離計定 契約者 保護

보험사는 적어도 1년에 한번 분리계정 계약자에게 분리계정자산의 투자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 계약은 계약특성에 적합한 유예기간, 부활 및 비몰수(nonforfeiture)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분리계정에 대해 비상위험준비금(special contingent reserve fund)의 설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뉴욕주는 비상위험준비금이 분리계정자산가액의 2.5% 보다는 작지 않되 칠십 오만 달러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은 분리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 할당된다.

2. 分離計定の 規模

미국 생보업계에서 분리계정의 총자산은 <도표 6>에서 보듯 1989 년말 약 1,500억 달러로서 총 자산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11.3 퍼센트였다. 1988년에는 192개의 생보사가 그리고 1989년에는 194

〈도표 6〉
미국 생보업계의 분리계정

(단위 : 십억달러)

년도	총자산	총분리 계정자산	분리계정 자산비중	분리계정 부채	총연금 준비금	분리계정의 연금준비금
1982	590.8	57.1	9.7	—	—	—
1983	656.6	67.5	10.3	67.2	—	—
1984	729.3	68.9	9.4	68.4	—	—
1985	832.1	86.5	10.4	85.9	371.3	80.1
1986	941.7	97.9	10.4	97.1	440.6	97.7
1987	1,044.3	103.7	9.9	102.8	501.8	101.7
1988	1,169.5	115.7	9.9	114.8	569.6	113.1
1989	1,298.5	146.2	11.3	144.7	641.7	131.2

자료 : Best's Aggregates & Averages(Life-Health) 1990. p.23.
Life Insurance Fact Book 1988 및 1990.

(도표 7)
분리계정자산의 구성비

년도	채권(%)	주식	저당대출	부동산	현금	기타	총액(백만\$)
1967	9.4	88.2	1.2	—	1.1	0.2	1,207
1970	17.3	79.8	0.7	0.1	1.4	0.7	5,601
1975	19.7	71.9	1.5	4.3	0.4	2.2	12,973
1980	34.6	49.5	1.9	9.3	0.9	3.7	35,772
1982	42.9	36.0	4.5	9.9	0.8	5.9	57,281
1983	40.22	37.01	6.4	9.5	0.8	6.0	67,856
1984	41.0	34.9	4.8	11.2	0.9	7.2	69,680
1985	38.8	38.8	5.0	9.7	0.7	7.1	88,101
1986	36.2	39.1	5.4	8.4	0.7	10.2	108,576
1987	32.9	42.7	3.7	8.3	0.6	11.9	112,129
1988	33.1	41.6	3.5	8.1	0.4	13.2	124,332
1989	29.7	45.1	2.6	7.7	0.3	14.8	146,220

자료 : 1990 Life Insurance Fact Book(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p.102.

개의 생보사가 분리계정을 운용하였다. 분리계정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압도적으로 기업연금 영업과 관련된 것이다. 분리계정의 연금준비금은 약 1,300억 달러로서 분리계정의 총부채에서 1989년말 약 9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분리계정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분리계정 운용자산의 종류가 다양화 되었다는 것이다. 분리계정이 운용되던 초창기에는 거의 주식 위주로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7>에서 보듯 1967년의 분리계정 자산은 실질적으로 채권과 주식이었고, 이중에서도 주식이 88.2 퍼센트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의 분리계정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의 비중이 45퍼센트로서 1967년 수준에서 반감된 반면 채권의 비중

은 1967년의 약 10퍼센트에서 약 30퍼센트로 대폭 증가되었다. 한편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의 추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80년대 초반 고금리 하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였다가 금리하락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점증하여 1984년에 11.2 퍼센트로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하락하여 1989년에 7.7 퍼센트의 비중을 보였다. 저당대출에 대한 투자비중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 1983년에 6.4퍼센트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1989년에 2.6 퍼센트의 비중을 시현하였다. 한편 기타자산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는 1 퍼센트 미만이던 것이 약 15 퍼센트를 점유함으로써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분리계정의 자산포트폴리오는 초창기의 주식 위주 운용에서 다양한 자산운용으로 변천하였다.

IV. 日本의 分離計定

1. 分離計定の 運用對象과 規制

1) 變額保險

일본에서의 변액보험과 관련된 제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가. 保險業法 施行規則

- A. 제11조 제2항—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특별계정(분리계정을 말함)을 설정하는 보험종류 및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자산과 그 평가방법을 기재하며, 보험계약 책임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B. 제 18조 제 2항—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경리를 명확히 다른 계정과 구분하고, 장부를 설정하여야 한다(구분경리)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계정의 경리처리가 다른 계정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는 관리수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특별계정전용의 장부를 비치하고 엄밀한 구분경리를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C. 제18조 제3항—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또는 특별계정간의 자산대체는 특별히 대장대신(재무성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계정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생보의 경우 일반계정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계정과 비교해서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일회사의 계정간이라 하더라도 독립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일반 계정으로부터 특별계정에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계정의 자산은 모두 공개시장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 진다.

- D. 제19조 제3항—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관해서는 동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운용의 수량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동조 1항 및 2항은 일반계정에 속한 자산에 대해서만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法人稅法 施行令

- A. 제 34조—생보회사의 특별계정에 속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한 유가증권과 구분하여 그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종류의 주식이라도 계정이 다르면 다른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B. 제 35조—생보회사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별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 保險業法

- A. 제84조—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평가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이 규정은 계약자를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시가평가의 상시적인 적

8) 明治生命・日本生命, pp.80-81.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B. 제86조-보험회사의 재산매각이익이 재산매각 손 및 재산평가손을 제하고도 남는 경우에는 준비금으로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준비금).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주무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적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86조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변액보험의 분리계정에 대한 운용규제는 일반계정과 비교해서 대폭 완화되었다. 1984년에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지침이 개정되어 생보사는 재산이용 방법서를 변경했다. 그 주요 내용은 외화표시 재산을 일반계정과 합하여 30% 이하로 규제하고, 특정회사에의 집중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일 회사의 사채, 주식을 분리계정의 10% 이하로 한 것 이외에는 분리계정에 대한 수량적 제한을 특별히 가하고 있지 않다.

2) 企業年金

기업연금의 분리계정에도 앞에서 언급한 변액보험의 관련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연금보험 상품중에서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 1특약 및 제2특약, 신기업연금보험 특별계정특약에 대해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있다.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 1특약은 생보 독자적으로 운용 방법(선택의 폭)을 확대한 상품으로, 운용 규제는 종래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후생연금기금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의 정도는 부과금,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합동운용특별계정

으로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리스크도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특별계정의 부가 시기는 주계약 체결시 매년 4월 1일 보험료 변경시 share 변경일 중의 한 시기로 한다.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2특약은 후생연금기금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으로서, 후생연금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운용 방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후생대신의 인가를 얻은 기금만이 대상이 된다. 인정 후에 증가되는 자산을 뉴머니(new money)라고 하며, 이 뉴머니가 운용의 대상이 되고 총자산의 3분의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단독운용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며, 자산의 구성 비율을 기금과 협의해서 운용하므로 해당 기금의 특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제1특약과 마찬가지로 기금이 운용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를 행할 수 없다.

신기업연금보험 특별계정특약은 기업연금보험의 하나인 적적연금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으로서 현행 기업연금보험에 부가하는 경우는 신기업연금으로 변경해서 부가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운용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며 당분간은 가입자수 100인 이상의 탈퇴율을 사용하는 계약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A. 신기업연금보험 특별계정특약과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 1특약

합동운용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은 일반계정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공사채 등), 대출금, 현예금, 콜론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자산의 운용규제에 대해서도 일반계정과 같이, 주

9) 生命保險協會, pp.155-157.

식은 자산의 30%이하, 외채자산은 30%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B. 후생연금기금보험 특별계정 제 2특약

① 인가

뉴머니를 제 2특약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생연금보험법 제130조 2 제2항에 규정). 인가 요건은[기금령 제3조 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3가지이다.

- 기금 설립후 8년이 경과 할 것
- 운용 집행 이사가 선정되어 있을 것
- 기금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을 것

② 운용 규제

운용규제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기금에 대한 규제가 있다.

제1특약에 대해서는 일반계정과 같이 종래와 같

은 운용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제2특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운용 규제('기금규칙 제41조 2'에 규정)가 적용되어, 기금별로 안정성이 높은 자산(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금융채)의 50% 이상, 주식과 외화표시채권은 30% 이하, 부동산은 20% 이하로 되어 있다. 또한 수탁 기관(생보, 신탁은행, 투자고문회사)에 대한 규제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은 50% 이상, 주식 50%이하 그리고 외화표시자산 50% 이하로 자산의 구성 비율은 기금과 협의하도록 했다.

③ 운용 단위

제1특약은 다른 연금 자산과 합동으로 운용하므로 개별 기금별로 자산의 규모는 관계 없지만, 제2특약은 개별 기금 별로 단독운용을 실시하므로 리스크 관리등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하여 최저 10

(도표 8)

적립형 상품의 운용계정 및 운용대상

계정구분	인가 및 발매시기	주요 상품	보험기간	예정이율	운용대상
합동계정	1953년	長期綜合, 積立페미리, 積立動産綜合, 積立團地	3-20년	3년, 4년, 4.5% 5년이상 5%	특별한 제한 없음
특별계정 제 1호	1986년	積立傷害, 積立生活綜合, 積立女性財形(積立傷害)	3-20년	3년, 4년, 4.5% 5년이상 5%	주식에 운용 못함
특별계정 제 2호	1988년		일정연수이상이면 일률적인 규정없음	5%	주식에 운용 제한 못함
이하의 특별계정은 회사에 따라 상이	1990년	年金拂 交通傷害長期	5, 10, 15, 20년	5%	특별한 제한 없음
	1990년	積立實年	10-20년	5%	특별한 제한 없음
	1990년	積立安心	3년	필요에 따라 다름	주식에 운용 못함
	1991년	積立이끼이끼生活	5년		
	1990년	積立介護	10-30년	5%	특별한 제한 없음
	1991년	積立勞災	3-10년	3, 4년, 4.5%	주식에 운용 못함
	1990년	健康生活積立傷害	3-20년	5년이상 5%	특별한 제한 없음

〈도표 9〉
일본 분리계정 운용특성비교

	일반계정	기업연금		변액보험	적립형보험
		·후생연금기금 특별계정 제1특약 ·신기업 연금	후생연금기금 특별계정 제2특약		
운용형태	합동운용(변액보험,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상품)	합동운용	단독운용(설립 8년 이상으로 후생대신이 인정한 기금)	합동운용(각사별로 단일특별계정설정)	합동운용(각사별로 단일특별계정설정)
운용대상자금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만(총자산의 1/3한도)	보험료(보험금지급준비 부분만)	적립형 기본특약 부대상품(특별계정 제1호)('86) 재형적격상품(특별계정 제2호)('88)등 11개상품의 보험료
운용수익	예정이율(5.5%) + 배당	실현손익등이 각 계약에 직접 귀속	실현손익등이 각 계약에 직접귀속	예정이율(4.5%) + 투자수익	예정이율(4.5-5%) + 계약자배당
주요운용규제	주식 30% 이하 외국유가증권 30% 이하 외화표시자산 30% 이하	좌동	주식 50% 이하 외화표시자산 50% 이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산한 외화표시 자산 30% 이하 ·동일회사의 사채, 주식율 분리계정의 10%이하	·주식운용금지 또는 종목에 따라 10%이하 ·외화표시자산 30% 이하 ·대출 10%이하
공시	총자산운용공시	합동특별계정 운용공시(특별계정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공시가능)	단독특별계정 운용공시(특별계정의 취지에 맞는 개별공시 가능)	합동특별계정 운용공시(계약체결 시와 가입후의 양 단계에서 요청)	

익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④ 특약 부가 시기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損保 積立型商品

적립형 상품의 자산이 양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자산을 안전하고 유리하게 운용하여 적정타당한 계약자배당을 실현하는 것이 일본 손보업계의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

는 적립형 자산을 다른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1986년에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조건을 정비했다.

'86년부터 발매된 적립형 기본특약부대상품에 대해서 분리계정 제 1호가 설정되었다. 또한 1987년 세제개정시 앞으로 발매되는 적립형 상품에 대

해서는 적립형 자산을 다른 자산과 명확히 구분정리 하고 자산을 주식에 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행적립형상품의 계약자배당을 특정이자로 인정하게 되었다¹⁰⁾. 그리고 1988년에는 재형적립상품의와 함께 분리계정 제 2호가 설정되었으며 그후 여러 적립형 상품에 분리계정이 설정되어 현재 11종목에 이르고 있다.(<도표 8> 참조)

이러한 적립형상품 분리계정의 운용규제를 살펴보면 주식에 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화표시자산은 전체자산의 30%이하, 대출은 1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적립형 상품에 대해서는 운용 대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으면 주식운용도 10%이하에서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품의 자산은 소규모로서 주식에 운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일본 분리계정 운용 특성 비교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기업연금에 있어서 분리계정 제 1특약과 제 2특약, 변액보험 그리고 손보적립형보험에서 분리계정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계정의 운용특성을 일반계정과 비교한 것이 <도표 9>이다.

2. 分離計定の規模

1) 生命保險

1990년도말 현재 일본내국 생명보험회사(19개사)의 변액보험 보유계약고는 <도표 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약 105만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은 11조 6,620억엔(전 년도대비 11.8% 증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계약고의 전수, 금액이 1989년도에 38%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등에 따른 금융형 상품의 판매부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말 현재 변액보험 분리계정의 자산규모는 2조 4,411억엔으로 그 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이 전체의 67.5%(1조6,963억엔)로 가장 높고 현예금이 전체의 22.9%(5,601억엔)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식이 28.9%, 외국증권이 20.5%, 공사채가 18.0%로 되어있다. 변액보험이 처음 발매된 1986년도 이후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과 공사채 비율의 감소가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현예금과 외국증권의 자산규모가 증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자본시장의 침체에 연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변액보험이 발매된지 5년에 불과하므로 아직 생보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도 부터 발매된 기업연금의 후생연금기금 분리계정의 수탁실적은 합동운용을 하는 제1특약의 경우 수탁전수가 112건으로 1,201억엔에 달하고 있다. 한편 후생연금기금 제2특약은 수

10) 자산을 주식에 운용하지 않는 것은 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 일본 세법에서는 法人간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배당금은 수익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나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배당금을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고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급이자×주식/총자산)으로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배당(부채이자)을 수익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손보사는 차입금이 없어도 적립형 상품의 '책임준비금'등이 차입금과 동일시되어 계약자배당등에 상당하는 부채이자를 수익에 산입하여야만 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적립형 상품의 고격을 고려할 때 장기자금인 책임준비금은 수익율이 낮으므로 가격변동이 큰 주식에 운용하지 않는다면 부채이자자가 아닌 특정이자로 취급하여 배당금의 수익불산입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세법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탁 사항이 전체적으로 미진한데 이것은 단독운용으로 실적배당을 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초년도인 1990년의 일본 주식시장의 침체등에 따라 기금의 관심이 저조했고 생보사들도 적극적으로 판매에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12 참조) 이러한 기업연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합동운용과 단독운용 모두 주

식과 채권의 비율이 높다. (도표 13 참조)

〈도표 10〉

변액보험 보유계약고 추이

(단위 : 건, 백만엔, %)

연 도	건 수	전년대비	금 액	전년대비
1988	742,943	113.5	7,511,096	113.8
1989	969,798	130.5	10,427,161	138.8
1990	1,049,356	108.2	11,661,954	111.8

〈도표 11〉

분리계정 자산규모 및 구성내용

	1986	1987	1988	1989	1990
현금, 예금	41.0 (12.9)	224.8 (19.1)	168.9 (12.1)	394.4 (20.0)	560.1 (22.9)
콜론	0.4 (0.1)	0.8 (0.1)	2.1 (0.2)	0.5 (0.0)	—
유가증권	261.7 (82.3)	933.3 (79.1)	1,171.4 (83.8)	1,370.7 (69.4)	1,696.3 (67.5)
— 공사채	95.0 (29.9)	399.8 (33.9)	428.5 (30.6)	395.2 (20.0)	438.5 (18.0)
— 주식	116.1 (36.5)	402.7 (34.1)	558.2 (39.9)	638.0 (32.3)	705.5 (28.9)
— 외국증권	50.7 (15.9)	128.4 (10.9)	184.6 (13.2)	337.4 (17.1)	549.3 (20.5)
기타	—	2.5 (0.2)	—	0.1 (0.0)	3.0 (0.1)
대출금	—	—	—	—	23.1 (0.9)
기타	15.0 (4.7)	20.6 (1.7)	56.0 (4.0)	208.9 (10.6)	161.6 (6.6)
총분리계정자산	318.1 (100.0)	1,179.5 (100.0)	1,398.4 (100.0)	1,974.5 (100.0)	2,441.1 (100.0)
생보총자산	63,906.2	77,611.7	94,920.7	113,562.3	127,662.7
분리계정자산점유율	(0.005)	(0.015)	(0.015)	(1.7)	(1.9)

자료) Insurance 生命保險統計號(1987-91년 각호)

〈도표 12〉
후생연금기금 특별계정 수탁실적

	제 1 특 약		제 2 특 약	
	수탁건수	적립금 (백만원)	수탁건수	적립금 (백만원)
日 本	20	26,086	2	1,987
第 一	22	27,595	1	130
住 友	25	22,229	2	1,697
明 治	13	11,547	1	1,176
朝 日	15	16,854	0	0
三 井	8	6,388	0	0
安 全	4	4,356	1	944
千 代 田	5	5,532	0	0

자료 : 年金事情 1991. 6. 17. p.15.

〈도표 13〉
기업연금특별계정 자산운용 실례

	합동운용 (적격연금, 조정연금 제1특약)			단독운용 (조정연금 제2특약)		
	구성비율	기대수익율	표준편차	구성비율	기대수익율	표준편차
국내유가증권	58	9.95	7.80	84	10.16	7.65
(채 권)	(28)	(8.00)	(3.33)	(45)	(8.00)	(3.33)
(전환사채)	(7)	(9.06)	(18.04)	(0)	(9.06)	(18.04)
(주 식)	(23)	(12.60)	(14.87)	(40)	(12.60)	(14.87)
외국유가증권	15	8.20	13.21	10	8.20	13.21
(외국채권)	(15)	8.20	13.21	(10)	(8.20)	(13.21)
(외국주식)	(0)	11.30	20.75	(0)	(11.30)	(20.75)
대 출 금	15	6.50	0.36	0	6.50	0.36
기 타	12	6.00	0.47	5	6.00	0.42
합 계	100	8.70	4.60	100	9.76	6.43

주) 1) 기대수익율은 明治生命의 경제금융예측에 의거하여 대상자산별로 산출
 2) 표준편차는 과거 9년간 월별 수익율로부터 산출
 자료) 明治生命保險, 企業年金特別勘定の運用, 1990.

〈도표 14〉
적립형 자산의 추이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비율(%)	16.0	23.2	27.5	31.3	33.3	37.5	45.5	48.4	51.3

자료) 日本の損害保険 p.135.

주) 손보총자산에서 적립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적립형 자산이란 적립형보험의 만기해약 환급금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損害保険

1953년부터 발매된 적립형보험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 현재 일본 손해보험의 주력상품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적립형보험의 장기성 자산, 즉 만기해약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책임준비금이 증대하고 있다. (도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성자산은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1988년에 손보총자산에 접하는 적립형자산의 비율이 50%를 초과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립형자산의 운용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 손보사들이 공시를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립형자산의 절반정도가 분리계정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V. 結 論

분리계정은 특정보험상품(또는 보험종목)을 다른 보험상품(또는 보험종목)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및 운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분리계정은 상품특성 및 리스크 부담이 상이한 보험상품을 별도로 운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타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금리자유화는 보험사에게 외부적으

로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을 보다 심화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금리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중요한 경영정책 사항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타금융기관의 고수익상품 개발 및 이에 따른 고금리선호도의 증대는 보험업계에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차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금리자유화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로서는 실세금리를 보다 近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요망된다. 그러나 현행 자산운용규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수익율의 실현이 용이하지 않고 나아가 금리감응형 상품의 금리리스크는 일반 보험상품의 금리리스크와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경쟁력 확보 및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분리계정의 설치·운영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주요한 분리계정 설치동기는 이와 유사한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 본고는 금리자유화 환경하에서 보험업계가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리계정의 제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리계정의 회계처리, 분리계정 운용규제 및 미국과 일본의 분리계정 운용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고는 분리계정을 도입하기로 할 경우 필요한 기초조사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분리계정의 회계처리는 분리계정으로의 금액할

당 및 투자, 그리고 투자와 직접 연루된 비용 및 세금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분리계정에 할당되는 금액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순보험료이다. 분리계정자산은 통상 평가일의 시가에 의해 평가된다. 한편 자산의 판매, 교환, 또는 이체를 분리계정간에 또는 일반계정과 분리계정간에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분리계정은 복수의 보험계약자산이 합동으로 운용되거나 또는 보험계약단위별로 단독 운용될 수 있다. 분리계정자산은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외부에 위임되기도 한다. 분리계정자산의 모든 투자수익과 자본손익은 분리계정 운용대상 상품에 직접 귀속처리되고, 투자성과는 통상 보험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분리계정자산과 그 운용성과액은 보험사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자산운용규제에 관계없이 또는 완화된 투자규제하에 투자 및 재투자된다.

미국의 분리계정은 전반적으로 60년대초에 기업 연금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보업계에 도입되어 변액보험, 변액연금등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어 왔다. 1989년말 194개의 생보사가 분리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분리계정 총자산은 생보업계 총자산의 11.3퍼센트를 점유하였고 이중 약 91퍼센트가 기업연금과 관련된 것이다. 분리계정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초창기의 주식위주 운용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으로 변천을 보였다.

일본의 분리계정은 생보 및 손보업계에서 공히 1986년도부터 도입·운영되어 왔다. 생보사는 변액보험(1986), 변액연금 복지사업단보험(1988), 후생연금기금과 적격연금(1989년)에 관련해 분리계정이 운영되고 있고, 손보사는 적립형 상품에 관련하여 분리계정이 운영되고 있다.

분리계정의 국내도입여부에 관한 문제는 보험업계의 상품개발과 기밀한 연관을 갖는다. 분리계정을 도입하기로 할 경우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러가지가 숙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분리계정의 설치, 운영과 관계된 제반규정(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사 회계규정등)이 개정 및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규정은 분리계정의 회계처리, 분리계정자산의 평가 및 매각등을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분리계정의 자산운용규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미국과 같이 자율의 여지를 대폭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일반계정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보다는 이완되었으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대두된다. 이는 분리계정운용대상 상품의 규모,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 및 타금융기관과의 경쟁력 관계등을 고려한 가운데 결정될 사항이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분리계정 자산운용규제가 이루어지든 현행 자산운용규제준칙과는 별도의 준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분리계정의 회계보고를 어느 정도로 보험사에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분리계정도입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일본의 재무제표는 미국의 재무제표에서와 같은 분리계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나 그대신 간편·편의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분리계정이 도입될 경우 회계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계정 계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공시요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험당국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자가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운용실적에 대한 적시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시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분리계정 계약자는 보험사 파산시 보증기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험당국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파산하여도 분리계정 계약자는 보증기금(Guaranty Fund)의 보호를 받는다.

본고에서 살펴 본 분리계정의 제반측면과 미국·일본의 운용현황이 분리계정의 도입이 요망될 경우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희망한다.

參 考 文 獻

-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Fact Book(1988 and 1990).
- A.M. Best, Best's Aggregates & Averages(Life-Health) 1990.
- Saunders, R.A., Life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Society of Actuaries, 1986.
- 宮本英利, 山本孝之, 損害保險-21世紀へのビジョン-,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8.
- 保險毎日新聞社, 新變額保險入門, 保險毎日新聞社, 1987.
- 關要, 變貌する 生命保險,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9.
- 生命保險新實務講座編集委員會, 生命保險文化研究所, 生命保險新實務講座 6(經理および數理), 有斐閣, 1991.
- 明治生命, 日本生命, 變額保險,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7.
- 生命保險協會, 團體保險, 生命保險協會, 1991.
- 森松邦人, 損害保險業界, 教育社, 1990.
- 山本晃, 日本の損害保險, 財經詳報社, 1989.
-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會計, 生命保險協會, 1991.